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3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 안호영·김병욱·김수흥

김윤덕 · 송갑석 · 송옥주

신영대 · 양정숙 · 장철민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.

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·토석·시설물 등을 전시·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.

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 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3호 등). 법률 제 호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"그 밖에"를 "국가정원, 지방정원, 생활정원(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그 밖에"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"자연휴양림 등"을 "자연휴양림·국가정원·지방 정원·생활정원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)	제12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)
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	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	
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	
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	
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수목원, 산림생태원, 자연휴	3
양림, 수목장림(樹木葬林), <u>그</u>	
<u>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	국가정원, 지방정원, 생활정원
림공익시설의 설치	<u>(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</u>
	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
	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.
	<u>이하 같다), 그 밖에</u>
4. ~ 16. (생 략)	4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산지전용신고) ① 다음 각	제15조(산지전용신고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	
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	
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	

유림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. 이하같다)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,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

- 1. 산림경영·산촌개발·임업시 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 원·산림생태원·<u>자연휴양림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 치
- 2. 3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1
<u>자연휴양림</u>
·국가정원·지방정원·생활
<u> 정원 등</u>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